



실업인정 담당 창구

_____ 층 _____ 번 창구

꿈을 응원하는

취업드림수첩

상담 중이거나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수첩 Q&A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 국번 없이 **1577-7114**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모바일	고객상담센터
www.work24.go.kr	Play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국번 없이 1350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시 **신분증과 취업드림수첩**을 반드시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일자리 소개, 그리고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유의사항

-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이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도 반드시 본인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24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실업인정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전송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소중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고용24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어플)의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와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조회' 메뉴에서 취업드림수첩 e북 기능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등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 증빙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모바일 어플,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자세한 유의사항은 2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증 붙이는 곳

수급자격증에 기재된 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하셔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는 매 회차 출석**하여야 합니다.
-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① 일반수급자

2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2~3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4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②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2차~3차 실업인정일: 2주 1회	2차는 IAP 수립, 3차는 구직활동 1회
4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③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2차부터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선택 가능
----------------------------	---

* 재취업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수첩 28~30쪽을 참고하거나,
②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을 검색하세요!

회차	실업 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인정 일수	지급된 급여 종류
----	--------	-----------	---------	--------------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수급자는** 공휴일 직후 평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신청일(수급 만료 후)이 아닌,
수급기간 내(수급만료일까지)에 수행하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급만료일 이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차				

※ 이 표에 직접 기재하는 대신 실업인정일 스티커를 부착해도 됩니다.

지급금액	다음 실업인정일	출석시간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	-------------	------	-----------------------------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수급자는** 공휴일 직후 평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신청일(수급 만료 후)이 아닌,
수급기간 내(수급만료일까지)에 수행하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급만료일 이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표에 직접 기재하는 대신 실업인정일 스티커를 부착해도 됩니다.

회차	실업 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인정 일수	지급된 급여 종류
----	--------	-----------	---------	--------------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수급자는** 공휴일 직후 평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신청일(수급 만료 후)이 아닌,
수급기간 내(수급만료일까지)에 수행하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급만료일 이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차				

※ 이 표에 직접 기재하는 대신 실업인정일 스티커를 부착해도 됩니다.

지급금액	다음 실업인정일	출석시간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	-------------	------	-----------------------------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수급자는** 공휴일 직후 평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신청일(수급 만료 후)이 아닌,
수급기간 내(수급만료일까지)에 수행하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급만료일 이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표에 직접 기재하는 대신 실업인정일 스티커를 부착해도 됩니다.



구직활동내역

* 인사 담당자가 작성, 명함 제출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내역

* 인사 담당자가 작성, 명함 제출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내역

* 인사 담당자가 작성, 명함 제출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 & 소득 발생 기록일지

1 January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ruary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March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용근로(단기예술인 계약, 단기노무제공계약 포함)한 날짜나 소득이 발생한 날짜를 아래 달력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세요.

4 April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June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근로 제공 & 소득 발생 기록일지

7 July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August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tember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용근로(단기예술인 계약, 단기노무제공계약 포함)한 날짜나 소득이 발생한 날짜를 아래 달력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세요.

10 October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November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December

202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구직급여 수급자 여러분께”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
활동이 필수입니다. 다음의 3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기억해주세요!!

첫째,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수급자격증 확인,
담당자 설명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면상담을 확대하고, 선별적인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심증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저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

Contents

01 |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22

수급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생기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02 | 고용24 홈페이지 활용하기

40

온라인 실업인정, 온라인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온라인 취업사실 신고,
온라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고용24 입사지원

03 |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50

04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59

05 | 취업지원 프로그램

61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24p)
-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24p)
-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24p)
-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25p)
-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25p)
-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6p)
-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26p)
-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27p)
-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7p)
-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8p)
-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30p)
-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31p)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31p)
-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였다면? (32p)
-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33p)
-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요? (34p)
-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34p)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자인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35p)

-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35p)
-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35p)
-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36p)
 - 구직급여 수급 중인데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어요. (36p)
 -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이 정정된 경우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37p)
-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37p)
-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크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37p)
-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8p)
-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9p)
-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39p)
- 가(假)인정자는 무엇이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39p)

온라인 실업인정 Q&A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43p)
- 구직급여 수급계좌를 직접 바꿀 수 있나요? (43p)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 및 방법 (54p~56p)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1.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취업드림수첩 4쪽 수급자격증을 확인하세요!!**
- ① 일반수급자
- ②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③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 52쪽 참조

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3.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4.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요) 수급자격자의 척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제4호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6.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 (예시)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 31일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대상기간은 3월 4일~3월 31일(28일간)

- (중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예시)	수급 만료일(예시)	실업인정일(예시)
3월 4일~ 3월 31일(공휴일)	4월 23일(토)	4월 25일(월)
3월 2일(대상기간 전), 4월 1일(대상기간 후) 재취업활동 불인정	4월 24일, 4월 25일 재취업활동 불인정 (수급만료 후 재취업활동에 해당함)	

-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조심하세요!

-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마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 (1차) 실업인정 유형이 **일반·반복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60세 이상 장애인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석도 가능)
☞ 41쪽 참조

- (4차)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상황일 경우 1차, 4차의 출석형 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8차)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일반수급자는 8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단, **반복수급자는** 반드시 **매 회차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2차에 수립한 IAP(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8.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 수급자 유형, 실업인정 차수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난 일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는 달라지니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9.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50% 감액**됩니다.

•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3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됩니다.

- (예시) 3차 실업인정의 경우: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 시,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부 부지급 / 5차 실업인정의 경우: 구직 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시, 해당기간 구직급여 50% 감액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10.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① 일반수급자

의무 출석일	1차, 4차, 8차(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출석, 그 외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희망시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3차) 4주 1회 / (4차부터) 4주 2회 /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4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②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 출석일	매 회차 출석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3차) 2주 1회 / (4차~7차) 4주 2회 /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2차 IAP(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 및 제출 3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③ 만 60세 이상 (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의무 출석일	4차는 출석,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희망시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	2차부터 구직활동, 구직외활동(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선택 가능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구직외활동이나,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해당 실업인정기간(통상 28일) 중 교육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이면 실업인정 차수에 관계 없이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 필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리부 주관 온라인 훈련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KDT 훈련 등)에 한해
교육기관에서 훈련수강증명서와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②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 중
총 2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고용센터 외 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운행,
여성새길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 *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부지급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③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식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11.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고용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다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를 통해 구직활동내역 입력 후 전송 필수)
취업포털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구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공고 + 입사지원 원료 화면 캡처•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원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면접 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증빙자료: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지인 소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 관련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박람회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 자료 제출
우편·팩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발송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송신 확인증

-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①실업인정 신청서, ②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③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
-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실업 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사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아래의 적발사례들이 있습니다.

 - 1)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2)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 3)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 4) 구인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 5)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 6) 수급자의 경력·연령·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7)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등)과 채용 공고의 직종·경력·학력·소재지·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 8)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지원의 소개를 받아 면접에 응시한 경우,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검토
- 9) 인사권이 있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 확인서를 제출(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처분)
- 10)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 11)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 12)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 13)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 1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24)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합니다.

- (중요) 고용24에서 입사지원한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합니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면 구직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였다면?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
- (예시) 취업, 자영업, 강사료,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보험설계 방문판매·대리운전 등 노무 제공, 프리랜서 활동 소득, 번역수당, 회의수당, 디단계 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공공근로, 인스타그램 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 명칭이 지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해주세요.

-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

〈근로사실/소득발생내역 신고 예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1. 7. 1.>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1쪽 및 2쪽 모두 작성하여 바란다. 10에는 해당되는 곳에 <input type="checkbox"/> 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수급자자격)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휴대전화번호(없는 경우 전화번호):]	
⑦ 실업인정 대상기간 증의 취업사실 등 확인	<input type="checkbox"/> 없음 []
	근로 또는 소득 내용 [<input type="checkbox"/> 마트 판촉행사 일용근로] 근로년짜 [1월 3일, 1월 4일, 1월 6일, 1월 7일] 소득금액 [<input type="checkbox"/> 40만원(하루 10만원)] 소득예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경우] 40만원(하루 10만원) 예상 사업자등록 (자영업개시)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있음 (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산재휴업급여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있음 (수급기간:)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강화됩니다!

-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4대 보험 전산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함
-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취·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 **(유의)**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 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신청방법은 47쪽 참고)
-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6.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사하였습니다.
 -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 시점에 따라 남아있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금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재실업신고 시점	실업인정 재시작일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이직 다음날 기준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초과	→ 재실업신고일 기준

-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니** 이직 후 즉시 재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7.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은 신분증과 취업드림수첩을 지참한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18.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자인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 당일 자정부터 17시까지 가능하며, 17시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당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날짜 착각 등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출국을 할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체류하면서 본인 또는 타인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타인이 대신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본인이 IP우회, 로밍, 원격제어 등을 통해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본인 대신 국내에 있는 가족, 지인 등이 온라인 또는 출석하여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전액반환, 추가징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17년부터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 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들과의 동거 등의 목적으로 인한 출국은 해외 취업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 (!) 배우자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반 출국은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한정**해서 인정하며,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해외 취업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이나, 온라인 특강수강 등의 구직외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약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 회차에 면접일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면접통보서, 면접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필요**
- 사회통념상 구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의심되는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부지급합니다.**

21.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 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2회까지만 수강 가능**
- 집단상담프로그램: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횟수제한 없음)
예시) 단기집단상담, 성취, 신호탄, 4U(포유), CAP@(캐피) 등
* 61~62페이지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고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단,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 자원봉사포털(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후 참여 가능)을 통한 활동이 1일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2-1. 구직급여 수급 중인데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어요.

-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차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2-2.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이 정정된 경우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이직확인서 내용이 정정되어 이전보다 구직급여일액이 많아지거나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났다면 기존 수급자격에 따라 받지 못한 금액 또는 일수 만큼 추가지급이 가능하며, 이미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3.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나 실업 불인정 처분,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부지급 또는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를 청구할 때는 해당 처분을 한 고용센터(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심사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제출합니다.
-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경우, **기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4.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합니다.(대리인 가능)
 -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급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한 경우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이 지속적으로 곤란하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상병급여 지급일을 지정 가능
- **상병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 ① 상병급여 청구서
 - ②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 상병의 상태와 명칭, 초진 및 완치일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소견서
 - ③ 출산 관련 증명서
-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휴업급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5.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전 사망하여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재취업활동(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우선순위: 수급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순

26. 통장이 모두 암류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암류된 수급자는 ①신분증과 ②수급자격증(취업드림수첩)을 들고 아래 은행에 방문하여 실업급여가 암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행복지킴이 통장을 사용중인 수급자는 별도 통장 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농·축협, 우체국

27.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늦어도 5일 **이내는 지급**되니 걱정마세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하지만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28. 가(假)인정자는 무엇이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 예외적으로 가(임시)인정자이신 분들은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한 고용센터로 전송 처리 중인 경우에는 처리 완료될 때까지 가(임시)인정자로 처리합니다.
- * 일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달에 근로한 내역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가 늦어지면 수급자격 처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가인정 상태인 수급자는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입금되니 걱정마세요.** 만약 본인이 가인정자인 경우, 먼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보냈다면 1~2주일 이내에 처리되오니 기다려 주세요. 만약 2주 넘게 수급자격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고용24 홈페이지 활용하기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기(PC/모바일)
- 온라인 1차 실업인정 및 취업특강 수강하기(PC/모바일)
-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활용하기
-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하기
-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 고용24로 입사지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국번 없이 ☎ **1577-7114**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 모바일 Play 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0**

고용24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기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24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①고용24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②국번 없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 **1577-7114**(전산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거나, ③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① PC 실업인정 신청 방법



- ① **실업인정일 달기**(자정~17시 사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검색 혹은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② 본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 고용24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③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없는 경우 새로 입력) 후 취업(소득 발생) 내역 등을 정확하게 입력
- ④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파일 항목에 첨부
- ⑤ 재취업 희망하는 직종(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⑥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저장 후 제출
- ⑦ 제출 완료 시 '완료' 상태로 표시되며, 실업인정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전송 완료 알림메시지 수신

고용24 홈페이지 활용하기

- 로그인 후 이번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근로, 소득발생내역 신고

- 재취업활동 내역 작성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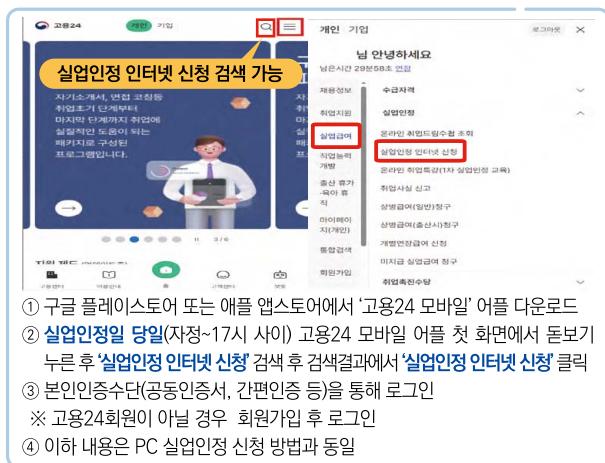
Q1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Q2 구직급여 수급계좌를 직접 바꿀 수 있나요?

- 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싶다면 **‘계좌 불러오기’**를 통해 등록된 **계좌번호** 정보를 불러와 입력
 - ② 새로운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해당 계좌번호의 **‘통장사본’**을 첨부

고용24 홈페이지 활용하기

②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방법



2. 온라인 1차 실업인정 및 취업특강 수강하기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STEP에서 제공하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1차 실업인정 교육>은 1차에만 인정됩니다.



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클릭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③ STEP 접속 후 위쪽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 로그인

④ 수강 희망하는 취업특강 수강 신청 후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 **‘강의실 입장’** 클릭

⑤ 특강 이름 옆의 ‘학습하기’ 버튼 클릭 후 수강

※ 모바일 어플 첫 화면에서 동일하게 '온라인 취업특강'을 클릭하면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1회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 취업특강(온라인 취업특강 포함)은 전체 수급기간 중 2회만 인정

- 한 번 수료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은 취업특강은
재수강하더라도 중복으로 실업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활용하기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메뉴를 통해 **취업드림수첩 전자책(e-북), 나의 수급자격증, 다음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담당자의 개별 알림사항**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실업인정일은 사전 안내 후 변동될 수 있음



고용24 홈페이지 활용하기

Q 실물 취업드림수첩을 뒤어버렸는데,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의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조회' 메뉴에서 **취업드림수첩 전자책(e-Book)**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어플 하단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조회

안내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및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확인입니다.
- 가장 최근의 수급자격 정보가 기본으로 조회되며, '수급자격신청일'을 선택하여 이전 수급자격 정보 또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주민등록번호

990123-1*****

성명

홍길동

수급자격일

2023-04-10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e-Book으로보는 실업급여안내

4.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하기

- 고용24 홈페이지(www.wor24.go.kr) 또는 고용24 모바일 어플로도
취업사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출산·육아·복지

Q
≡

HOME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고
▶
취업사실 신고
▶
취업사실 신고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수록자체
1. 취업 신고
2. 폐업신고
3. 차리증
4. 차리원도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취업사실 신고 클릭
※ 취업하신 경우는 취업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택스, 텔레통신 등을 통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란 [취업신청] 버튼, 반드시 [제출]버튼을 누르시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버튼
(기준내용 조회)

신고인 정보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취업내용
취업내용

- ① **취업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24 모바일 어플에서 취업사실 신고 검색 혹은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클릭

- ② 본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 고용기기 허워이 아닌 경우 허워이 가이드를 참고하

- ### ③ 치어 또는 차이한 사언자 전부 이력

- ① 치(치)여 전 이으 히(히)나 소(소)드 바(바)새하(하)니여 드(드)

- ② 희(희)의 제 8회전의 고지고언을 반으 레자 전보

- #### ▶ 허아: 그크레아니 제작자

- #### ▶ 허락·판권·제작·제작자 등록

- #### ▶ 8월(근로아시급률·기준 84%). 시급지수 87.8%

고용24 홈페이지 활용하기

5.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모바일 앱 신청 가능)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가능
-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54~56쪽 참고



① 취(창)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검색 혹은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② 본인인증수단(동인동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 고용24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취업 또는 창업한 사업장 정보 입력

④ 과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이력 등 입력

⑤ 취(창)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

⑥ 취(창)업 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년간 매출내역 신고 등) 첨부

6. 고용24에서 입사지원하기

- 고용24 하나로 잡코리아, 사람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의 채용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24(www.work24.go.kr) 회원가입



① 고용24 접속 후 상단 **회원가입** 클릭
② 회원가입 유형선택 「개인회원 가입」 클릭
③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후 고용24회원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동의 클릭
④ 개인 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완료

② 구직신청

- ① 고용24 로그인 후 채용정보 → **구직신청** 클릭하여 구직신청
② 구직신청 완료 후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가능
③ 구직신청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③ 채용정보 검색



① 고용24 첫화면의 '채용정보 → 일자리 찾기' 메뉴에서 **'채용정보 상세검색'**을 선택하면 키워드, 직종, 지역, 경력, 학력 등 세부 항목에 부합하는 일자리 검색 및 입사지원 가능

④ 입사지원 및 관리

- ① 채용정보 확인 후 **'이메일 입사지원'** 버튼 클릭 → 채용기업 이메일로 이력서가 전송됨
②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업으로 연락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이메일 입사지원**
③ 입사지원한 내역과 채용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 가능
(메뉴: 마이페이지 → 구직관리 → 알선 / 입사지원내역)

⑤ 결과 입력

취업한 경우 로그인 후 취업결과 통보

(취업결과 통보 또는 구직신청 취소는 전화로도 가능)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고용보험 가입 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한 이직자가 성실하게 재취업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01. 실업급여 종류별로 이해하기

02.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03.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 이해하기

04. 예술인·노무제공자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05.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06.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국번 없이 ☎ **1577-7114**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 모바일

Play 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0**

1. 실업급여 종류별로 이해하기

구분	지급요건	지급수준
구직급여	〈수급자격〉 ①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②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 지급 * 상한액: 66,000원
	〈실업인정〉 ③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상병급여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청구 가능	구직급여액과 동일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음)
연장급여 (*)	훈련 연장 급여 (*)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수강하도록 지시한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최소 2개월 전부터 상담 필요)
	개별 연장 급여 (*)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지급)
취업률 진단 수당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넘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구분	지급요건	지급수준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7,530원 지급 ※ 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공무원 예비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 실비 지원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 (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 시 7.5톤 상한으로 50%)

* 위에서 (*) 표시된 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거나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급하며, 사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연령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69조의6 관련)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 훈련연장급여

- 수급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 아래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 ④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는 그 직업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별연장급여

- 신청기한: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아래 요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것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제외)
 - ②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
 -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하
 - ④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원 이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 ★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을 받아 응모하였거나 집단상담 또는 심층상담에 참여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 검토하여 지급을 결정하며 신청한다고 **무조건 대상으로 선정되진 않습니다.**
- 따라서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알선처 선정, 구직 여건의 어려움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수급 만료 직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 💡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연장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아래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 ①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
 - ②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③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가 6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 충족 시 선지급 가능
 - ④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재취업일	일용근로 대상기간
3월 5일	3월 5일~4월 4일 4월 5일~5월 4일 ... 다음 해 2월 5일~3월 4일(12개월째) 매 기간마다 10일 이상 일용근로 필수
	* 3.1.~3.3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⑤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②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③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④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⑥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⑯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제수당 포함 임금 총액(세액))**
 - ⑯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면,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 자급액은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사업자 공통)
- ② 근로자: 12개월 이상 근속여부와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 ③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진표), 기타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업종별로 제출서류 상이할 수 있음**)

- ④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 (**근로자**) 6개월 이상 계약 기간 및 월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등 (**사업자**)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할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 계약서 등

청구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가능.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는 요건 충족 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함

- 처리기관: (원칙)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담당했던 고용센터

- **수급 중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고, 계속고용기간 중에(12개월내)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로, 또는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로 근로형태가 바뀌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와 상담 필요**

★ **(중요)**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

5. 예술인의 재취업활동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 단기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본인의 창작물을 SNS 또는 창작물 판매업체 등에 등록하고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의 이력·경력 등을 SNS 또는 예술인 관련 단체에 등록하고 홍보하는 활동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하며, 같은 내용을 등록할 경우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의 창작물을 공모전·언론·잡지 등에 출품 또는 투고하는 활동
-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주최하는 예술인 워크숍 또는 세미나 참여
 - 기간 및 시간 등과 관계없이 1개과정 참여시 재취업활동 1회 인정
-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기업 등이 지원하는 창작지원사업 또는 예술공간 지원사업 등에 응모한 경우
- 전시회·음악회·콩쿠르·콘서트 등에서 실연(實演)하는 경우
 - 단, 국가·지자체·재단·예술인단체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주최한 행사에서 실연한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6. 노무제공자의 재취업활동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 노무 제공 직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증 취득
 - **(방과 후 강사)** 역량개발을 위한 자격증(놀이지도 자격증,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등)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목 프레젠테이션 참여 등도 인정
 - **(보험설계사)** 보험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 과정 수강
 - **(화물차주)**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활동
 - * 화물주와의 운송계약, 번호판 지입계약, 화물차량 변경 계약일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본인의 노무 제공 직종 관련 교육을 위한 국가·지자체·노무제공자 협회단체 등의 컨설팅 또는 교육 참여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 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받은 활동비 등 수당의 하루 액수가 구직급여일액 초과 시 소득 발생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
- 노무제공자 협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 인력풀, 구인사이트 등에 구직등록한 경우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하며, 수급자격 신청 시 하는 구직신청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예시)** 방과 후 강사로 교육청 내 관련 인력(구직)풀 사이트에 신규 등록
- 업무 수행을 위해 무급 또는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은 소득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경우
- **(예시)**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의 경우 통상 신규 입직을 위해 기준 노무제공자와 동행근무가 확인될 경우
- 전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7.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회사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산입니다.
- 재산 6억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후 **본인 부담분(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재산·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였더라도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실업크레딧은 수급자 **1인의 전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를 비롯해 매 실업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그 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실업인정·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위장고용, 위장퇴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산재휴업급여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하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제공 등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안내 〉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근로제공(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보험설계·방문판매·대리운전 등 노무제공, 프리랜서, 공공근로, 강의, 취업, 자영업 등)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검토하오니, **모든 형태의 근로제공 및 어떠한 명칭이든지 소득발생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에 해당**되면, **전액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는 근로제공일 기준입니다.(소득 수령일 기준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 ① 전국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 신청 제한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와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부정수급 공모, 연대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거짓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으로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추가징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③ 부정수급 반환금·추가징수금 향후 구직급여 수급 시 강제 충당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이후 반환금·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잔액이 남아있다면, 실업 인정 시 향후 지급 예정인 구직급여의 10%를 의무적으로 충당(감액)한 후 지급 받게 됩니다.

* (예시) 구직급여가 200만원이면 20만원 감액 후 180만원만 지급

④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급합니다.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적으로 28일)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분(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28일치) 반환
- 단,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
-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며, 최대 5배 추가징수**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자들의 취업의욕 강화와 자신감 회복은 물론 본인에 대한 이해와 강점 발견, 구직기술 습득 등 성공적인 취업을 돋기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내용	일수	시간
집단상담	성취프로그램	성인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기술 향상을 통해 자신감 회복 지원 • 취업정보수집, 지원서류 작성, 모의면접 등 	4	24
	청년취업 GYM(집)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모듈 프로그램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특성별 모듈(총 16개) 조합 운영 • 취업동기 부여, 정보탐색, 취업 클리닉, 적응력 향상 등 종합 지원 	2~4	12 ~24
	청년취업 ON(3종)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직무군별(영업사무/영업마케팅/IT) 주요 역량 이해와 관련된 개인 경험 연계 중심 구직기술 강화 지원 	2~4	12
	내일또 다시 (2종)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치·정비·생산직, 사회복지·돌봄직 분야 재취업지원을 위한 정보탐색역량 강화 지원 	3	12
	마음똑똑 심플	취업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단념청년, 니트 및 성인 구직자 등 자기이해를 통한 구직의욕 향상 지원 	3	12
	조선업 취업희망자	조선업 취업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환 고민 중장년층 등의 인식개선과 산업·직무 이해를 통해 직업 선택 폭 확대 	2~3	12
신호단	반도체 취업희망자	반도체 취업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의 반도체산업 분야 진출을 돋우고, 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 	2~3	12
	신종녀 재취업설계	50~6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이전직 준비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 이해와 경력 전환기의 재취업 활동 지원 	3	18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주요내용	일수	시간
집단상담	취업희망 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과 구직의욕 향상 지원 일 직업기자 나의강점·채용트렌드 이해, 대인관계향상 지원, 희망실현 계획서 작성 등 	4	24
	4U(포유) 40대 구직자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40대 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대 구직자들의 진로전환과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높이며 구직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3	18
	CAP@(캐파)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직업선택부터 구직활동까지 종합 지원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4	24
	Hi+(하이플러스) 고졸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교 2~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 보드게임, 온라인시스템 등을 활용, 경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형 활동 강화 경력·직장·취업역량·구직준비이해, 채용서류·면접·준비실전, 경력개발계획수립 등 	2~5	8~20
단기 집단상담(7종)	구직급여 수급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스트레스 다루기, 청년(마음의 힘기르기, 나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 신중년(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 나를 이해하기, 직장 내 행복한 대화 이끌기) 등 	1	각 3
취업특강(8종)	구직급여 수급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요령,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근로기준법, 취업정보 수집 등 	1	각 2
행복오름(7종)	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이해, 강점 발견, 구직기술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지원 	1	각 1.5

★ 고용센터마다 운영 프로그램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개인
기업
광고내보내기
시간선택
로그인
아이디찾기
이용면허
고객센터
문제제보
문제제보

취업지원
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출산 휴가·육아 휴직

입지리창기
개인취업검색
수급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신청
취업기여도
설업인정
온전 첫가신청

채용회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촉진수당
훈련 기관·기관

김소기업
일 경관
취업지원금

① **고용24(www.work24.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신청탭**으로 들어가기

② **프로그램 신청탭**에 들어가 희망하는 과정과 일정을 검색하여 **참가 신청** 클릭하여 신청 완료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알선 및 취업상담 서비스

- 대인상담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알선
-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소개



구인·구직 만남의 날

- 고용센터 주관으로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면접을 봄으로써 신속한 취업을 지원



동행면접

- 면접에 자신감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담당자가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창업 지원 및 무료강좌 사이트

종합 취업정보	고용24	www.work24.go.kr	복지분야	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잡코리아	www.jobkorea.co.kr	보육분야	보육교사	boyuk.guinnet.com
	인크루트	www.incruit.com	방송분야	미디어잡	www.mediajob.co.kr
	시람인	www.saramin.co.kr	디자인분야	디자인잡	designjob.co.kr
	사랑방잡	job.sarangbang.com	판매유통분야	샵마넷	www.shopma.net
아르바이트	알바몬	www.albamon.com	건설분야	기술잡	www.gisuljob.co.kr
	알바천국	www.alba.co.kr		올드라이버잡 (운전)	www.alldriverjob.co.kr
	월드잡	www.worldjob.or.kr		건설 워커	www.worker.co.kr
해외취업	파플엔잡	www.peopleenjob.com		콘잡	www.conjob.co.kr
	슈퍼루키	www.superrookie.com			
	나라일터	www.gojobs.go.kr			
공공기관	잡알리오	job.allio.go.kr	의료분야	메디플	www.mediple.kr
	클린아이침플러스	job.cleaneye.go.kr		널스잡	www.nursejob.co.kr
	이엔제이잡	www.engjob.co.kr		메디잡	www.medijob.cc
교육 및 강사	훈정마을	www.hunjang.com		메디컬잡	www.medicaljob.co.kr
	집티쳐	www.jobteacher.co.kr	창업지원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IT분야 (스타트업)	로켓펀치	www.rocketpunch.com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여성기업일자리허브	www.iljarihub.or.kr
대기업 취업 준비커뮤니티	위포트	www.weport.co.kr		k-startup 창업지원포털	www.k-startup.go.kr
	잡이룸	www.joberum.com	취업지원 및 무료강좌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취업지원 및 무료강좌	사이버진로 교육센터	www.work.go.kr/beredu		광주광역시 사이버학습센터	sisa.or.kr
	국기평생학습포털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자식	www.gseek.kr
	인천시민 사이버교육센터	incheon.hunet.co.kr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www.dream.go.kr

직업능력개발 지원

(www.work24.go.kr)

1. 국민내일배움카드

- **(목적)** 직업능력·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 협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생, 자영업자(임대소득 4,800만원 이상),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을 통해 신청
 - 홈페이지(www.work24.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구직급여 수급자인 경우 고용24 구직신청 필수)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목적)**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 협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생, 자영업자(임대소득 4,800만원 이상),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될 수 있습니다.**

면접사실 확인서

(현재 직원을 모집 중인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FAX	
	모집 분야 (구체적 업무내용)			
지원자 (구직자)	성명		생년월일	
	면접일		년 월 일	

당사는 현재 구인 중이며, 위 사람은 당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서류제출 및 면접 응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정부와 민족

사업장명 :

대 표 자 :

면접관 또는 인사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 서류 : 구인공고, 명함

※ 별도의 구인공고 없이 지인 소개로 면접에 응시한 경우, 인사담당자(면접관)께서는 반드시 위 사항을 충실히 기재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면접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면접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그 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2호·4호)
 - ▣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오니 재취업활동 수행시 유의
 - ▣ **하위·형식적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의 조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① 일반수급자			
2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2~3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가능	
4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②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2차~3차 실업인정일: 2주 1회		2차는 IAP 수립, 3차는 구직활동 1회	
4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③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2차부터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선택 가능	

* 재취업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수첩 28~31쪽을 참고하거나,
② 고용노동부 유통브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을 검색하세요.



재취업활동은 직무적으로 기준에 맞게



고용노동부